[별표 1] <신설 2002.8.28>

엔지니어링기술인력의 자격기준(제3조제1항관련)

기 술 인 력	필 수 기 술 인 력
1. 기술사 2. 기 사 3.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자 4. 과학기술분야(정보처리부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분야 외의 분야를 포함한다)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5. 전문대학의 과학기술분야(정보처리부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분야외의 분야를 포함한다)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	1. 기술사 2.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3.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4. 박 사 5.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6.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7.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